●환경부공고 제2021-280호

「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에 대한 표시방법」(환경부고시 제2017-238호)을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 차법」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.

2021년 4월 14일

환경부장관

화학물질의 용기 · 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(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,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)에 대해,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'화학물질 분류·표시기준 통합표준 안('19.6)'을 반영하고자 함

2. 개정 내용

가.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 표시사항에 '화학물질 분류·표시기준 통합표준안('19.6)'이 반영된「화학물질관리법」시행규칙 별표2 제3호(개정 '21.4.1)를 따르도록 변경(제3조및 별표 1 개정)

3. 의견제출 방법

「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에 대한 표시방법」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화학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
 - 전화 : 044-201-6844, 팩스 044-201-6830
 - 전자우편 : island@korea.kr
- 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<u>www.me.go.kr</u>, 법령/정책→법령정보→입법·행정예고)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